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나2236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배선헤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9. 20.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12. 선고 2021가단79427 판 결

주 문

1.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4.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취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7,281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 4. 19. 이후

지연손해금(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양수채권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2쪽 마지막 줄 아래에 ‘G은 2022. 2. 무렵 피고에게 전매계약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가 반환해야 할 전매대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갑9).’를 추가한다.

2.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여 G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G은 전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9조, 제570조). C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G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G에게 전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전매대금 7,281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반환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매수인인 G이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또는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바,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G으로부터 전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이므로, 그 채권양수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